

채무면제·유예상품 직장인플랜 세부약관

구분	내용
상품 개시	· 상품 가입 후 회사가 승인한 날의 24:00시부터 개시
상품 철회	· 상품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신청 철회 가능 · 철회 시 회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 수수료는 반환됨
상품 약정의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상품 해지 가능 · 아래의 사유는 자동 해지됨 - 회원이 만 60세의 연령에 도달한 때 - 결제대금 연체 및 신용카드 정지등의 사유로 상품 수수료가 회원의 신용카드로 2개월 연속 결제 승인되지 않았을 때 · 사망으로 채무면제보장을 받은 경우 (단, 가족형의 경우,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채무면제보장을 받은 경우에는 해지되지 않음)
상품 약정 기간	· 상품 약정이 해지되지 않는 한 상품 약정은 회원이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됨 (단, 만 60세 도달 시 자동 해지)

구분	내용
수수료 부과	· 월 상품 수수료는 회원의 개인 카드로 사용된 총 카드 결제금액에 상품 수수료율을 곱하여 청구됨 (총 카드결제금액은 회원의 개인카드로 사용된 청구일 당시의 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 금액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결제	· 회원의 신용카드 결제 승인 후 도래하는 첫 번째 결제일에 결제됨
수수료 구분	· 결제 승인 시점부터 1개월간의 보장에 대한 수수료임

구분	내용
보장 제공기준	· 상품 기간 중에 보장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당시 회원의 채무액 면제
채무액 산정일	· 사망일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보장 청구서, 사망입증서류(사망진단서 포함) 및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한 사항	· 상품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원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동일 질병에 의한 사망

채무면제·유예상품 직장인플랜 세부약관

치명적 질병

구분	내용
보장 제공기준	· 보장 대상자가 상품 기간 중에 "치명적 질병 진단" (주요 장기 이식 수술 포함, 이하 동일)을 받은 경우, 회원의 채무액 면제 (단, 암의 경우 상품 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 받은 경우에 한함) · "치명적 질병 진단"이라 함은 의사에 의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뇌혈관 질환, 허혈성심질환, 만성신부전증,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주요 장기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를 의미함
채무액 산정일	· 치명적 질병의 경우는 진단일 · 장기이식수술의 경우는 장기이식수술의 원인이 되는 사고일 및 질병 진단일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보장 청구서, 치명적 질병의 진단입증서류(특정질병진단서 포함), 장기 이식수술의 입증서류 (수술확인서 포함) 및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진단일/수술일(장기이식수술)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한 사항	· 상품 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 확정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 상품 개시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받은 경우 ·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치명적 장애

구분	내용
보장 제공기준	· 보장 대상자가 상품 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한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된 경우, 회원의 채무액 면제 · "치명적 장애"이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채무액 산정일	· 상해의 경우 사고일, 질병의 경우 진단일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보장 청구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진단서,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제출기간 : 장애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한 사항	·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일(상해의 경우 사고일, 질병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365일 이후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치명적 장애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장기입원

구분	내용
보장 제공기준	· 보장 대상자에게 "장기 입원"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채무액 면제 · "장기 입원"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등에 치료를 목적으로 최초 입원 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 60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 받는 경우를 말함 (단,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
채무액 산정일	· 입원개시일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보장 청구서, 입원 입증서류(입원/퇴원확인서 등) 및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61일 계속 입원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한 사항	·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으로 인한 입원 · 전쟁 및 유사사태로 입원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요양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유로 입원 · 장기 입원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채무면제·유예상품 직장인플랜 세부약관

비자발적실업

구분	내용
보장 제공기준	· 보장 대상자가 “비자발적 실업”으로 실업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가입증명서에서 정한 금액(100만원)과 비자발적 실업 당시의 회원 채무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 · “비자발적 실업”이라 함은 직업을 잃고 직업을 잃은 날 이후에 고용보험법에 의해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 받아 실업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함
채무액 산정일	· 비자발적 실업 발생일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보장 청구서,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 기타 요청서류 · 제출기간 : 비자발적 실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
보장 제한 사항	·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을 경우 · 정년 퇴직한 경우 · 형법, 직무관련 법률 위반 또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 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준 경우 · 고용계약에 준한 고용계약 만기로 퇴사한 경우 ·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상품 개시 후 90일 내에 실직한 경우 · 비자발적실업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수족골절

구분	내용
보장 제공기준	· 보장 대상자가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족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증명서에서 정한 금액(100만원)과 회원의 채무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 · “수족 골절”이라 함은 어깨 및 팔꿈치의 골절, 아래팔의 골절, 손목 및 손 부위에서의 골절, 넓적다리뼈의 골절 발목을 포함한 아랫다리의 골절,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골절의 경우를 말함
채무액 산정일	· 수족 골절 진단 확정일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보장 청구서, 진단서,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수족골절 진단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한 사항	· 수족골절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자동차사고

구분	내용
보장 제공기준	· 보장 대상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가입증명서에 규정된 기간(6주)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 가입증명서에서 정한 금액(100만원)과 회원의 채무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 · “자동차사고”라 함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를 말함
채무액 산정일	· 자동차사고 발생일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보장 청구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기타 요청 서류 · 제출서류 : 자동차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한 사항	· 구비서류 : 자해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진단 · 6종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만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